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6.06.30.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EU로 무동력 펠릿 난로 수출 시 규제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 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EU 규정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수출 시 EU 규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 규정이 분야별로 중첩되어 제품에 적용되므로 검토해야 할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한 편입니다. 또한, 국가별 규제도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바이어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EU > EU member countries in brief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member-countries_en

CE CPR : 건축자재 규정

	◆ CE CPR Article 2 - Definitions : 'construction product' means any product or kit which is produced and placed on the market for incorporation in a permanent manner in construction works or parts thereof and the performance of which has an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construction works with respect to the basic requirements for construction works;
	- 근거규정 : EUR-Lex : Regulation (EU) No 305/2011(CE CPR)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1R0305
	- European Commission :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CPR)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nstruction/construction-products-regulation-cpr_en

▶ CE CPR 인증제도 개요

건축자재란 건설 공사에서 영구적인 방식으로 제조되거나 **시판 후 사용하는 모든 제품(Product)** 이나 키트(Kit)이며, 건설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건설 공사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품을 말합니다.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규정(Regulation)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또는 해당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제품 시험, 공장 심사 등의 적합성 평가 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유럽에 판매되거나 진입하는 모든 건축 자재들은 CE 마킹을 부착해야 합니다.)

▶ 인증 대상 품목

건축자재란 건물 및 토목공사 목적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영구적인 일부분을 구성하도록 제작한 모든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멘트류, 단열재류, 벽재, 바닥재, 지붕재, 누수방지재류, 모르타르, 타일류, 접착제류, 회전문, 화재감지기류, 창호 및 도어류, 주방용 자재류, 조명용 기둥류, 도로 안전시설 자재류, 구조용 목재류, 굴뚝, **히터 등 난방 설비류**, 닥트 밸브 및 캡, 파이프, 누수방지설비, 탱크, 골재 및 충전재, 구조용 베어링류 등 건물 및 토목공사 목적물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이 대상입니다.

▶ 펠릿 난로(pellet stove)

European Commission의 CPR Harmonised Standards의 Products covered by harmonised standards under the CPR에서 wood pellets room heater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SO	Reference and title of the standard (and reference document)	Reference of superseded standard	Beginning of the coexistence period	End of the coexistence period
CEN	EN 16510-2-6:2022 Residential solid fuel burning appliances - Part 2-6: Mechanically by wood pellets fed roomheaters, inset appliances and cookers	EN 14785:2006	09/11/2023	09/11/2025
CEN	EN 16510-2-5:2025 Residential solid fuel burning appliances – Part 2-5: Slow heat release appliances	EN 15250:2007	09/02/2026	09/02/2027
CEN	EN 16510-2-7:2025 Residential solid fuel burning appliances – Part 2-7: Combination appliances fired by wood logs and pellets		09/02/2026	09/02/2027

▶ 인증 절차



※출처 : KTR CE CPR

▶ 필요 서류

제품카탈로그(국/영), 신청자 정보, 기술문서 등

Ecodesign for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 Regulation (EU) 2015/1185

▶ EU ECODESIGN이란?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이하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이 2024년 7월 1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SPR은 가전 등의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에너지 효율성을 주된 요건으로 명시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ESPR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리적 품목 및 서비스의 설계·개발단계부터 폐기 또는 재활용 등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내구성, 재사용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품을 EU 시장 표준으로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COMMISSION REGULATION (EU) 2015/1185

implementing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codesign requirements for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6)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should include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designed to use solid fuels (biomass or fossil).**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that have an indirect fluid heating functionality are also within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using non-woody biomass have specific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should therefore be exempted from this Regulation.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는 **고체 연료(바이오매스 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고체 연료 국소 난방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간접 유체 가열 기능을 갖춘 고체 연료 국소 난방기도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비목질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고체 연료 국소 난방기는 특정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므로 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Article 1

Subject matter and scope

1. **This Regulation establishes ecodesign requirements for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putting into service of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with a nominal heat output of 50kW or less.**

Article 2

Definitions

(1)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 means a space heating device that emits heat by direct heat transfer or by direct heat transfer in combination with heat transfer to a fluid, in order to reach and maintain a certain level of human thermal comfort within an enclosed space in which the product is situated, possibly combined with a heat output to other spaces, and **is equipped with one or more heat generators that convert solid fuels directly into heat;**

<중략>

(11) 'woody biomass' means biomass originating from trees, bushes and shrubs, including log wood, chipped wood, **compressed wood in the form of pellets**, compressed wood in the form of briquettes, and sawdust;

즉,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고체 연료 국소 난방기)는 제품이 설치된 밀폐된 공간 내에서 사용하는 난방장치를 말하며, **펠릿 형태의 압축 목재(woody biomass)를 사용하는 제품**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Article 3
Ecodesign requirements and timetable

1. The ecodesign requirements for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are set out in Annex II.
고체 연료 국소 난방기의 친환경 설계 요건은 부록 I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shall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Annex II from 1 January 2022.
고체 연료 국소 난방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부록 II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Compliance with ecodesign requirements shall be measured and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set out in Annex III.
친환경 설계 요건 준수 여부는 부록 III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측정 및 계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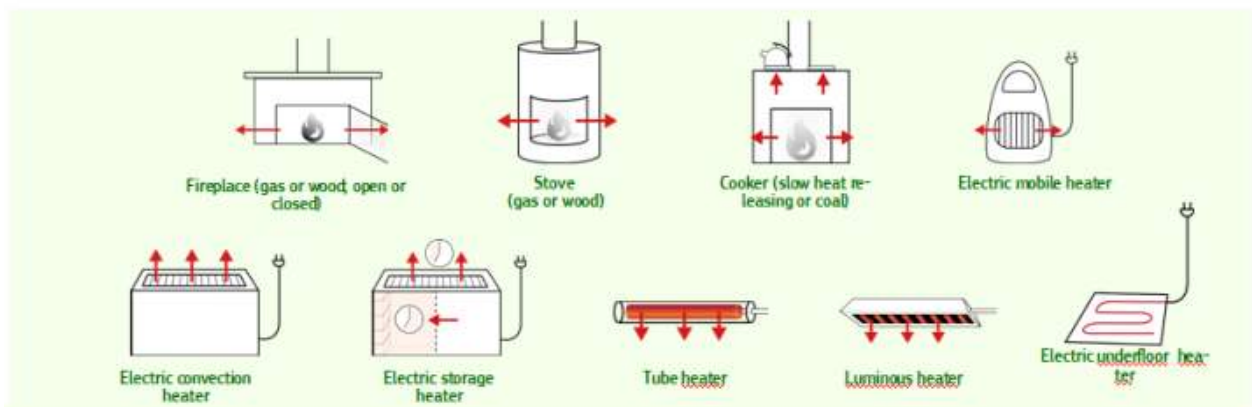
해당 규정의 ANNEX II : **Ecodesign requirements**에는 계절별 난방 에너지 효율을 위한 특정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Specific ecodesign requirements for seasonal space heating energy efficiency)이 기재되어 있으며, 에너지 효율, 유기체 화합물, CO, NOx 배출 요건등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UR-Lex : Regulation (EU) 2015/1185(ecodesign requirements for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https://eur-lex.europa.eu/eli/reg/2015/1185/oj/eng>

EU Energy Labelling

국소 난방기기는 에너지라벨 대상입니다. EU 집행위는 국소 난방기기에 대해 에너지라벨이 적용되며, 정격 열출력 50 kW 이하 제품은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을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mples of Local Heaters



※출처 : European Commission : Energy Efficient Products - Local Space Heaters

Scope

The following table shows some examples of products in scope and out of scope in the Ecodesign Regulation:

In Scope	Out of Scope
●domestic local space heaters with a nominal heat output of 50 kW or less and commercial local space heaters with a nominal heat output of the product or a single tube segment heat output of 300 kW or less. This Regulation also lays down Ecodesign requirements for separate related controls. ●local space heaters using with solid fuel: coal, log wood and pellets 석탄, 장작, 펠릿과 같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국소 난방기	●local space heaters designed, tested, marketed and declared exclusively for outdoor use; ●heat output at nominal heat output;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specified for the combustion of non-woody biomass only. ●Solid fuel air heating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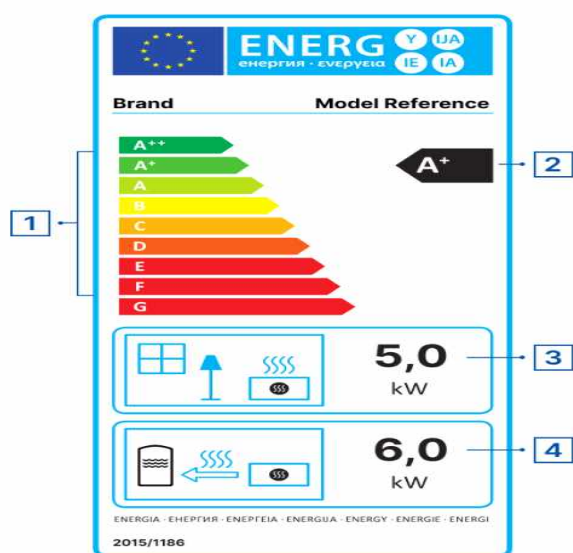
상기 표에 표시되어있는 것처럼 local space heaters designed, tested, marketed and declared **exclusively for outdoor use**(실외용으로만 설계, 테스트, 판매 및 표기된 지역 난방기)는 에코디자인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출하시는 품목이 실내용인지 실외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하게 됩니다)

▶ Energy Label

Local space heaters with a nominal heat output of 50kW or less are sold with energy labels as of 2018. The rating scale ranges from A++ (most efficient, only applicable to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that use pellets) to G (least efficient).

2018년부터 정격 열출력이 50kW 이하인 국소 난방기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됩니다. 등급은 A++(최고 효율, 펠릿을 사용하는 고체 연료 국소 난방기에만 해당)부터 G(최저 효율)까지 있습니다.

Understanding the Local Space Heater Energy Label



1. Scale of energy efficiency classes from A++ to G.
2. The energy efficiency class of this product.
3. Direct heat output in kW.
4. Indirect heat output in kW.

*출처 : European Commission : Energy Efficient Products - Local Space Heaters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UR-Lex : Regulation (EU) 2015/1186(regard to the energy labelling of local space heaters)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15/1186/oj/eng

EU GPSR(일반제품 안전규정)

소비자용 난방기기로 판매된다면, EU GPSR(일반제품 안전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GPSR은 특정 EU 안전법이 다루지 않는 위험에 대해 보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일반제품 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

- 목적 :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안정성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

- 적용대상 상품

- GPSR은 EU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유통되거나 소비자가 이용가능한 상품(consumer products)의 안정성에 관한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새상품(new), 중고상품(used), 리퍼브 제품(repaired or reconditioned) 포함
(*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수리 또는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표시된 제품은 제외)
 - 상품에 대한 대가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예: 무료 샘플)
 - 온·오프라인 판매 경로 불문(all sales channels)
 - 유형 및 무형의 상품 모두 포함(예: 소프트웨어)
 - 서비스는 적용대상이 아니나, 서비스와 함께 적용되는 상품은 적용 대상에 포함



Textile, apparel
And footwear



Furniture



Juvenile
Products

General
merchandise

▶ GPSR 주요 포인트

① **제품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확대** →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

대상 : 모든 역내 유통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 유통업체

내용 : 제품 패키지 또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제조사의 정보(상호, 상표, 주소) 및 제품 정보(제품의 종류), 제품에 대한 주의 사항 및 안전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함. 또한 이메일 주소와 소비자 상담 서비스 등 관련 정보도 명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6.06.30.]

② 온라인 플랫폼 의무 규정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책임 강화

대상 :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내용 : 위험한 제품에 대한 내용을 통보 받은 후, 2일 내 제품을 해당 플랫폼에서 철회(의무)

사용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소비자들의 불만표시가 있을 시 플랫폼은 3일 내에 확인 및 대응해야함.

또한 EU 법인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서 플랫폼이 이미 출시된 제품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무작위 검사하도록 권고 및 Safety Gate를 기반으로 물품을 검사하도록 의무 조항 추가(* 디지털서비스법(DSA) : 불법 및 유해 콘텐츠로부터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책임 강조 및 의무 규제를 수립하는 법안)

③ 리콜절차 강화 → 소비자에 대한 안전 보장 강화

대상 : 소비자

내용 :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경우 연락처를 기입, 추후 해당 제품에 리콜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됨. (소비자에 대한 안전 보장 강화)

대상 : 제조사

내용 : 리콜된 제품에 대한 수리, 교체 또는 환불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구제권리(right to remedy)를 제공해야함.

④ 원거리 판매자 : EU 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 EU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판매자

내용 : EU 지역에서 유통을 위해서는 원거리 판매자의 경우 EU 지역에 소재하는 EU 책임자를 지정해야만 하고, 그 연락처를 라벨링에 포함해야 함. (EU 책임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주문 처리 서비스 업체 등이 그 임무를 수행가능) EU 책임자는 제품 등록 후 10년간 기술문서를 보관하고, 클레임 등 정보 수집 후 제조사에 전달하며, 유럽 관계 당국과 의사소통을 하는 역할

▶ 즉, EU 역외에서 수입되어 EU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EU 내에서 상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responsible person)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음 (GPSR 제16조 제1항).

⑤ 기타 공통 의무사항

- GPSR 준수를 위한 내부 상품 안전성 절차 확립
- 시장에 출시하는 상품의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 협조
- 정부당국 요청시, 10년간 특정 상품정보(위험성, 불만사항, 시정조치) 및 6년간 공급망 추적 정보(supply chain traceability information)* 제공
- * 사업자는 자신에게 “상품, 상품에 내장된 부품, 구성요소 또는 소프트웨어(A)”를 제공한 사업자, 또는 자신이 A를 제공한 사업자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정부당국에 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통보
- 집행위가 대중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 상세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설립하는 추적 시스템에 데이터 제공
- 모든 영향을 받는 소비자에게 제품 안전 리콜(safety recalls) 및 안전 경고(safety warnings)를 알릴 것.
- 원격판매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 전에 제조업체 또는 그 대리인의 정보, 상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 관련 경고나 안전 정보 제공

EU GPS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U 일반제품 안전규정 : Regulation (EU) 2023/988 on general product safety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0988>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규제

펠릿 난로(펠릿 스토브) 본체의 도장, 코팅, 접착제, 고무패킹, 단열재 등에 SVHC 등 제한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REACH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ACH 화학물질규정 (Regulation (EC) No 1907/2006)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처럼 **유럽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할 때에는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요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화학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해 유럽 화학물질안전청(ECHA)에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 제도로써 위해우려물질을 규제합니다. 미등록된 물질 및 미등록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EU내 제조/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REACH는 모든 법적 책임을 EU 내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수입업자가 등록 의사가 없거나, 국내 기업이 수입업자에게 물질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은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을 선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REACH 법령에 의하여 귀사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EU REACH 적용 대상물질(제품)

구분	대상물질
등록대상물질	물 질 : 연간 1ton 이상의 물질 혼합물 : 혼합물 내 포함된 연간 1ton 이상의 물질 (단, 상위 공급자가 동일 용도로 등록한 물질은 면제) 완제품 : 완제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 1 톤/년 이상의 물질 (단, 상위 공급자 또는 다른 등록자에 의해 동일 용도로 등록한 물질은 면제)
등록제외물질	· 의약품 (Regulation (EC) No.726/2004) · 식품 첨가물 (Regulation (EC) No.178/2002) · 식품 향신료 (Commission Decision 1999/217/EC) · 시료 첨가물 (Regulation (EC) No.1831/2003) · 동물 영양제 (Council Directive 82/471/EEC)
등록면제물질	· Annex IV ·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 저장 중 우연히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 최종 사용시 발생하는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 (예: 신화방지제,충진제, 탈수 등에 의한 화학반응 생성물)

	· 그 자체로서는 수입 또는 시장출시가 되지 않은 부산물 · 물질이 등록이 된 이후 그 물질과 물이 결합하여 생성된 수화물 또는 수화이온 ·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 (예: 광석,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 · 유해성 및 위해성이 이미 잘 알려진 기초적인 물질들(예: 수소, 산소 등) ·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는 PRORD 물질(한시적 면제물질)
--	--

※출처 : KTR - EU REACH

▶ 관련규정

REACH 관련 법령은 아래 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대상 조건은 REACH 규정 제6조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REACH 규정 적용범위는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ACH 규정 원문 Regulation (EC) No 1907/2006 (통합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06R1907-20190702>

- ECHA > REACH Legislation <https://echa.europa.eu/regulations/reach/legislation>

- ECHA > REACH <https://echa.europa.eu/regulations/reach/understanding-reach>

- European Commission > REACH

https://ec.europa.eu/growth/sectors/chemicals/reach_en (영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해당 자료는 제품 분류 및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및 절차로서, 세부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제품별로 적용되는 강제 규제 또는 특정 인증에 대하여 해외정보자료를 무료로 조사하여 드립니다.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첨부되어있는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 드립니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 CPR - Harmonised Standards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nstruction/construction-products-regulation-cpr/harmonised-standards_en

- EUROPEAN COMMISSION : Summary of references of harmonised standards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 Regulation (EU) No 305/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2011 laying down harmonised conditions for the marketing of construction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9/106/EEC

<https://webgate.ec.europa.eu/circabc-ewpp/d/d/workspace/SpacesStore/2b770290-3866-4834-92c5-809811e437da/download>

- KTR : CE CPR

<https://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2144/index.do>

- EUR-Lex : Regulation (EU) No 305/2011(CE CPR)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1R0305>

- EUR-Lex : Regulation (EU) 2015/1185(ecodesign requirements for solid fuel local space heaters)

<https://eur-lex.europa.eu/eli/reg/2015/1185/oj/eng>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6.06.30.]

- KOTRA 해외시장뉴스 : EU 에코디자인 규정이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https://dream.kotra.or.kr/dream/kotra/actionKotraShortUrl/UwgIDVgDZRPw.do>
- European Commission : Energy Efficient Products - Local Space Heaters
https://energy-efficient-products.ec.europa.eu/product-list/local-space-heaters_en
- 외교부 : EU 사법소비자총국의 일반제품 안전 규정(GPSR) 설명회 결과(2025-01-31)
https://www.mofa.go.kr/be-ko/brd/m_7557/view.do?seq=134417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KOTRA 해외시장뉴스 : EU, 제품 안전규제 강화 위해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개정
<https://dream.kotra.or.kr/dream/kotra/actionKotraShortUrl/40mvhR7i0pHE.do>
- KOTRA 해외시장뉴스 : 독일 헤어케어 제품 시장 동향(2024-12-16)
<https://dream.kotra.or.kr/dream/kotra/actionKotraShortUrl/SJR0P3x7BNdB.do>
- UL : European GPSR Compliance Services
<https://www.ul.com/services/european-gpsr-compliance-services>
- KTR : EU REACH
<https://ktr.or.kr/educonsulting/test-technology/contentsid/165/index.do>
- REACH 규정 원문 Regulation (EC) No 1907/2006 (통합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06R1907-20190702>

그 외 국가별 규제

이는 유럽연합국 전체에 적용되는 EU 연합국 공통적 규제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실제로 각 국가에서 유럽 임의규격을 차용하여 강제화하거나 더 엄격한 국가규제를 별도로 두고 규제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뿐 아니라 나라별 규제 검토도 필요합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유럽의 규정을 넘어서서 더 엄격한 수준의 제품 안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몇몇 EU 회원국은 화학물질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 혹은 더 엄격한 국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지침 이외에 지적재산권, 오염규정, 포장, 라벨링, 제품 안전(유해염료사용 제한 등) 같은 각 국가별 국내업계기준이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뿐 아니라 나라별 규제검토도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현지 바이어 및 각 나라의 관할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European Commission > Trade Helpdesk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act-form?type=INFO>

문 의 처

상기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 및 최신 현지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유럽 현지의 수입업체,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라별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품질인증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 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유럽지역본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500>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프랑스 파리 무역관,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 이탈리아 밀라노 무역관 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http://eu.kita.net/>

- KITA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EL : 1566-5114)

<https://www.kita.net/expertHub/main.do>

유 의 사 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 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 · 모바일 · 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i/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O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귀사의 관련 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